

#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89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10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「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」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명칭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 및 법률상 위임하지 않는 조항 삭제
- 법률과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여 조례를 간소화하고, 어항관리협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 위원회 관리

## 주요내용

- 가. 어항시설 사용료 부과산정 기준 인용규정 정비(안 제23조, 제26조, 제27조제3항)
- 나. 법률상 위임하지 않는 가산금 조항 삭제 (안 제29조, 제31조제2항)  
- 가산금의 징수 조항을 법률상 근거가 없어 해당 조항 삭제
- 다. 어항관리협의회 비상설화 명시 및 법률과 중복 내용 정비(안 제32조)
- 라.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요 범위 이외 조항 삭제(안 제33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- 「어촌어항법」 제36조, 제37조,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6. 8. 23.(화) ~ 9. 12.(월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< 붙임 1 >

##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「공유수면 관리업무 처리 규정」 제10조” 를 “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」 제15조” 로 한다.

제26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9조제1항 및 「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” 을 “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제2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 산정한다.” 를 “산정하고, 건물의 일부를 산정할 경우에는 「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9조제3항에 따른다.” 로 한다.

제27조제3항 중 “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” 를 “지방세 부과·징수 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” 로 한다.

제29조 및 제3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「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 및 제2항” 을 “「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」 제19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,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협의회 위원은 「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, 협의회는 안전이 발생되면 구성하며, 협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라” 를 삭제한 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은 종전의 규

정에 따른다.

소관 실과		해양수산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해양수산과장 박근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해양개발계장 안승덕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지선 (행정 2337)



현행	개정안
<p>③ (생략)</p>	<p><u>관리 조례</u> 제29조제3항에 따른다.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사용료 납입고지 등) ① ~ ② (생략) ③ 사용료의 납입고지서, 사용료 수납·분납방법,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</p>	<p>제27조(사용료 납입고지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지방세 부과·징수 또는 체납처분의 예에---</p>
<p>제29조(가산금의 징수) 어항시설을 점용·사용한 자가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지방세법」 제27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제31조(변상금의 징수) ①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제31조(변상금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  &lt;삭제&gt; 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2조(협의회회의 구성 등)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, 「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산시 어항관리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</p>	<p>제32조(협의회회의 구성 등) ①----- -----「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」 제19조----- ----- ----- ② 협의회 위원은 「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, 협의회는 안전이 발</p>

현행	개정안
<p>성하며, 위원장은 어항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지명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할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</li> <li>2. 관할구역의 어촌계장</li> <li>3. 관할구역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</li> </ol> <p>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· ⑤ (생략)</p> <p>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어항시설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해당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해당 어항의 환경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으로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생되면 구성하며, 협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
<p>제33조(협의회의 개최) ① 협의회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어항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장소, 일시,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</p>	<p>제33조(협의회의 개최) ① 삭제</p> <p>① 시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장소, 일시,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